

2026년 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모집공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창업지원 활성화 및 콘텐츠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간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2026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사업 참여 **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금번 공고는 지원사업 프로그램 수행기관(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 스타트업 선발은 액셀러레이터 선정 후 별도 진행 예정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추후 통합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26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공고명 : 2026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모집공고 ○ 사업목적 : 콘텐츠 분야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 (약 8개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스타트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액셀러레이터 역량강화 지원비, 인건비 등 ○ 지원규모 : 액셀러레이터 2개 기관 (기관당 최대 1.9억원) ○ 지원대상 : 스타트업 발굴, 멘토링, 투자유치 등의 액셀러레이팅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자격요건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공고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셀러레이터 단독 수행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사업계획서 별첨 내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확인 ○ 지원조건 : 자기부담금 10% 이상 부담 필수 (현금인정, 현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A)= 국고지원금(B) + 자기부담금(C) (자기부담금: C/A*100) (예시) 국고지원금(90%) 최대 1.9억원 지원 시, 사업자부담금(10%)은 22백만원 이상 편성 ○ 수행내용
구분	사업내용 (필수항목)
스타트업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선정평가 및 검증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스타트업 9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산업 연관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해 콘진원 최종검증 후 선정기업 확정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스타트업 30% 이상(3개사 이상) 선발 필수 - KOCCA 통합공고 모집 후 KOCCA 지원사업관리규칙 및 평가지침에 따라 선정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은 선정 이후 세부지침 제공 예정) - KOCCA 최종검증 후 스타트업 최종선발, 협약 및 보조금 별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상 우수한 스타트업 발굴 방안(모집홍보, 파트너십 활용 등) 제시 ☞ 사업계획서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선발계획(평가위원단 풀) 제시
인력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명 이상의 참여인력(수행책임자, 실무담당자) 구성 ○ 기업별 1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멘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멘토는 스타트업 선발 및 수요조사 이후 확정 가능 * (권장) 기업별 집중 멘토링을 위해 멘토 1인당 3개 내외의 기업 매칭, 단계별 멘토 확보 등 - 전담멘토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운영 경험자(3년 이상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 콘텐츠분야 스타트업 창업자 또는 5년 이상 임원급으로 재직한 자 ② 투자, 멘토링 등 벤처창업관련 전문 업무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해외 진출경험,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기여도, 인지도 등 고려)

구분	사업내용 (필수항목)
<p style="text-align: center;">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p>	<p>○ 선발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업계획서상 자체계획 및 성과지표(KPI) 명시 필수</p> <p>공통</p> <p>①기업 진단: 선정기업 개별 진단(대면)* 및 결과보고,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 핵심BM/역량, 투자현황/수요, 교육/멘토링 수요, 해외진출 계획, 애로사항 등</p> <p>②멘토링: 전담 멘토링(전담멘토 확보),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워킹</p> <p>③투자 ○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 희망 투자기관 매칭(투자 라운드), IR Deck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시 기업육성 지원사업 스타트업* 중 참가희망 기업 지원 * 프로그램 기획 이후 투자연계 창업도약 프로그램, 선도기업연계 동반성장지원 사업 수행중인 기업 중 참여 희망자 포함 운영</p> <p>○ 국내·외 데모데이 개최 1건 이상 개최</p> <p>④판로지원 - 대중견기업 협업 기회 제공을 통해 스타트업 판로확대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p> <p>⑤후속관리 - 사업종료시 선발 스타트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스타트업 성과추적 계획 수립(3년 이상) 및 운영방안 보고 - 우수 스타트업의 PR,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기사 발굴/배포</p>
	<p>자율</p> <p>○ AC의 미션/비전, 특화분야, 특성 등을 반영한 활동 기획·제안 - (예시) 기존 AC 프로그램에 우수기업 참가 지원(전시·행사, 네트워킹, 해외 등) - (예시) 스타트업의 외부활동 참가·운영 비용 지원(행사, 컨퍼런스, 세미나 등) - (예시) 콘텐츠 분야 이해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AC 교육 수행</p> <p>○ AC의 콘텐츠산업 분야 및 스타트업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예시) 콘텐츠 분야 MOU/파트너십 구축, 참여인력 교육, 액셀러레이터 자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독려</p>
<p style="text-align: center;">직접투자</p>	<p>○ 선발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투자 (1건 이상, 총 1억원 이상 필수) - 금액 및 방법은 수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립·수행 -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완료</p>
<p style="text-align: center;">K-스타트업 본선참가 지원</p>	<p>○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6> 본선 참가사 선발 위한 예선(콘텐츠리그) 운영 * 26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사업 수행중인 스타트업 대상 예선평가 진행</p> <p>○ 본선 진출팀 대상 수요 맞춤형 전담 멘토링, IR, 투자유치 등 지원</p>
<p>신청서 접수기간</p>	
<p>○ 공고기간 : 2026. 2. 12. (목) ~ 2. 27. (금) 11:00 ○ 접수기간 : 2026. 2. 12. (목) ~ 2. 27. (금) 11:00 ※ e나라도움시스템 외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p>	
<p>신청방법</p>	
<p>○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e나라도움 회원가입, 로그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운영체제 윈도우7 이상(웹브라우저 크롬 권장) * e나라도움에 신청기관 등록 후 접수(기관이 아닌 개인이 e나라도움으로 신청한 경우 불인정 처리)</p>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폴더 제출)**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필수	작성양식	파일형식
사업신청서(수행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	지정양식	HWP(한글), PDF 각 1부
붙임1 참여인력 이력(수행책임자, 대표)	○	지정양식	사업신청서 내 양식 활용
붙임2 외부 전문인력 이력서 및 참여확인서	○	지정양식	사업신청서 내 양식 활용 (서명 필수)
붙임3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지정양식	사업신청서 내 양식 활용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정양식	사업신청서 내 양식 활용 (서명 필수)
붙임5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수행내역	해당시	지정양식	사업신청서 내 양식 활용
별첨1 과제신청개요	○	지정양식	EXCEL
별첨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지정양식	EXCEL
별첨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획자 등록증	○	사본	PDF
별첨4 기타 제출자료 ·콘텐츠 스타트업 보육 건수, 직접투자 금액(건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공개 가능한 범위)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민감정보 마스킹)	선택	자유양식	PDF 또는 zip

○ 작성 및 제출방법

1. 사업신청서 일체(표지, 내지, 별첨 일체) 통합파일 각 HWP, PDF로 저장 (분리X)
2. 별첨 엑셀파일(지정양식) 작성, 별첨파일 확인
3. 위 통합날인본(HWP, PDF)을 별첨파일과 함께 1개의 폴더에 넣어 압축하여 e-나라도움 업로드
 ※ **제출파일명: 신청업체명.zip**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로 조정(초과 시 첨부 불가)**

선정절차

○ 선정절차: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종합심의(최종선정)

- ① **(서면평가)**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신청기업 중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
 - 고득점순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 지원기준 충족여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사업계획서 별첨 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등록증 확인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5배수 내외일 경우, 통합평가(서면+발표)로 대체할 수 있음
- ②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종합심의를 기회를 부여
- ③ **(종합심의)** 단계별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협약대상자 선정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총득점→발표평가의 배점이 높은 기준의 득점으로 우선순위 부여
 - 협약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과제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최종 편성내역 확정
 -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30%) + 발표평가(70%)
 -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
 - ※ 신청기관 규모에 따라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지원조건에 부합(70점 이상)하여도 고득점 기업이 많을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평가기준					
단계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배점	
자격기준 충족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된 창업기획자	-	
서면 평가	수행기관 (3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0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최근 3개년(23~25년) 콘텐츠 스타트업 보육건수, 직접투자 금액(건수)	20	
	참여인력 (20점)	참여인력 확보 및 참여율	참여인력의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참여율 적정성 최근 3개년(23~25년)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투자 경험	10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 구성요건, 전담멘토 요건 충족 여부 (유사과제 수행경험 및 경력 등)	10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사업비 규모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 직접투자 계획, 프로그램별 비용 편성 등	5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5	
	과제기획력 (40점)	프로그램 이해도	목표시장 및 사업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20	
		프로그램 독창성	타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20	
	합계				100
	발표 평가	수행기관 (20점)	협업역량	멘토 등 프로젝트 참여인력과의 협업역량 확보여부	10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의지, 각오	10	
과제내용 (37점)		프로그램 완성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20	
		프로그램 경쟁력	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대비 특징 및 강점 비교	17	
기대성과 (40점)		투자매력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선발 스타트업 투자유치 가능성	10	
		후속발전가능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선발 스타트업 성장/발전 가능성	15	
		목표타당성	금년도 스타트업 투자계획 및 신규육성 계획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동반성장 기여 여부 - 제시한 성과의 실현가능성 여부	15	
ESG (3점)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1	
		지역기업(계량)	주관기관 지역기업 여부(본사 기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2점	2	
합계				100	
통합 평가	수행기관 (25점)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의지, 각오	10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최근 3개년(23~25년) 콘텐츠 스타트업 보육건수, 직접투자 금액(건수)	15	
	참여인력(10점)	참여인력 확보 및 참여율	참여인력의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참여율 적정성 최근 3개년(23~25년)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투자 경험	5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 구성요건, 전담멘토 요건 충족 여부 (유사과제 수행경험 및 경력 등)	5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사업비 규모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 직접투자 계획, 프로그램별 비용 편성 등	5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5	
	과제기획력 (22점)	프로그램 이해도	목표시장 및 사업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10	
		프로그램 독창성	타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12	
	기대성과 (30점)	투자매력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선발 스타트업 투자유치 가능성	10	
		후속발전가능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선발 스타트업 성장/발전 가능성	10	
목표타당성		금년도 스타트업 투자계획 및 신규육성 계획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동반성장 기여 여부 - 제시한 성과의 실현가능성 여부	10		
ESG (3점)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1		
	지역기업(계량)	주관기관 지역기업 여부(본사 기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2점	2		
합계				100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기업(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등)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p>※ 지원기관수 및 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p> <p>※ 사정에 따라 지원금 분할지급 횟수 변경될 수 있음</p>	
지원요건	<p>○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p> <p>※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 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p>○ 사업담당자 연락처 : 기업육성팀 손지은 주임(sjieun@kocca.kr/061-900-6381) 기업육성팀 정현지 주임(ulhyunji@kocca.kr/061-900-6383)</p> <p>○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 단순 시스템 이용방법/접수 오류 등은 e나라도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콘텐츠금융제도	<p>○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p>*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p> <p>○ [참고]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p> </div> <p>○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p> <p>※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p>
기타사항	<p>○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p>○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p> <p>○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p>

- 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실적은 결과보고서 및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함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 **행사개요**

- 행사명: <도전! K-스타트업 2026> 창업경진대회
- 주관기관: 중기부, 창업진흥원
- 목적: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한 창업팀을 발굴·포상
- 참가자격: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운영방식: 예선리그를 거쳐 우수 참가팀 선발 및 통합본선·왕중왕전
- 지원내용
 - 부처별 본선 진출팀 간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최종 수상자 대상 포상 및 차년도 정부지원사업 후속연계 지원

□ **주관기관 과업 세부내용**

- 주요과업: <도전 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팀 선정 및 지원
- 평가대상: 기관별 2026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에 선발된 스타트업 중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이면서,
 -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 진행하여야 함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은 선정 이후 세부지침 제공 예정)
- 선정기준: 기관별 예선을 통한 우수 초기 스타트업 총 5팀 선발
- 선정방법: 액셀러레이터 및 콘진원 자체평가 추진
- 선정절차(안) / * 변동 가능

※ 예선리그를 통한 최종 본선진출 5팀 선발: 7월 중

예선 1차 (액셀러레이터)	⇒	예선 2차 (한국콘텐츠진흥원)	⇒	통합본선	⇒	왕중왕전
서류 및 발표평가 7월		발표평가 7월		발표평가 10월 예정		발표평가 12월 예정

- 지원내용: 선발된 우수 창업팀 대상 통합본선 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IR,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 수요 맞춤형 집중 지원

□ **목·세목 용도 및 정산기준**

목	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산정 및 정산 기준>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에 따라 계상 ○ 주관 및 참여기관 임직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집행 불가
	상용임금 (03)	1.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및 인턴 등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 및 정산 기준>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주관 및 참여기관 임직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집행 불가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산정 및 정산 기준> ○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임시직에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주관 및 참여기관 임직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집행 불가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전문가 활용비 (내부직원 지급불가, 외부전문가에 해당) - 전문가 자문료, 감사료, 원고료 및 각종위원회 수당 - 각종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BM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변리사·변호사 업무위탁대가 - 초빙강사료 * 강의 횟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 고용계약을 통해 한시적 채용 후 임금을 고정지급하는 경우 일용임금에 계상 2.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명함, 다이어리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교육훈련비 - 국내외 전시회, 세미나,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등의 교육경비(직원,교육생) -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법정교육 등 5. 광고료 및 광고료: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 <산정 및 정산 기준>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 26년 선정기업 이외 수혜기업(졸업기업), 연계사업(투자연계, 선도기업연계 등)에 대해 추가산정 가능
	임차료 (07)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본 사업과 관련된 제작장비 등을 위한 임차에 한함(기존 사무실 임차료 등 불인정)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3. ASP 서비스, Saas 서비스 <산정 및 정산 기준>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목	세목	내역
		<p>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p> <p>○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 26년 선정기업 이외 수혜기업(졸업기업), 연계사업(투자연계, 선도기업연계 등)에 대해 추가산정 가능</p>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p>1. 사업추진 중 외부인을 포함한 평가 및 행사 시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경비 <산정 및 정산 기준> 과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경비만을 인정(1인당 최대 5만원) 평가 및 대외행사 관련 금액만 인정</p>

□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p>가. 공고문 內 지원조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숙지 후 신청</p>
<p>나. 사업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책정하며, 현금만을 인정함</p> <p>* 지원조건 : 총 사업비(100%) = 국고 지원금(90%) + 사업자 부담금(10%)</p> <p>* (예시) 국고지원금 1.9억원 책정시, 사업자부담금 2.2천만원 (총사업비 2.12억원의 10%)</p> <p>사업자부담금 현금 부분 책정 시 보조금 관리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함</p> <p>사업자부담금도 사업비 정산범위에 포함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다.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해 작성</p> <p>* 지원내용 : 참여인력 인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p>
<p>①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임직원 인건비는 국고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모두 편성 가능 · 법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는 국고로 편성불가 *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하나 참여율 50% 이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세법 등에 따라 국고지원금, 자기부담금 모두 편성 불가 (법인 전환 후 예산변경 가능하며 협약 전 완료를 권고함) · 통상임금(기본급 및 고정수당)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상에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 퇴직금, 퇴직예치금 성격의 퇴직보험 등 편성 불가 ※ 4대보험은 개인 부담분은 참여율에 비례하여 인정, 사업자 부담분은 불인정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 기준에 준해 편성해야함 ※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 동안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연 평균 참여율을 말하며, 타기관 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본 과제의 참여율과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없음 · 사업수행 인건비 산정 기준 및 증빙확인 예정(실급여기준 과대계상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증(최근 3개월), 고용 및 연봉계약서(신입직원) 등 확인 · 4대보험은 개인 부담분은 참여율에 비례하여 인정, 사업자 부담분은 불인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임직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집행 불가 <p>② 일반수용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근거가 실소요금액일 경우 2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 적용(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사례 등 활용)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불가(조달청 등 이용) <p>③ 임차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또는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만 인정(사무실 임대료 불가) <p>④ 일반용역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분야 편성만 가능(과다편성시 조정 가능)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불가(조달청 등 이용)
<p>라. 위 세목 외의 항목은 불인정함. 신청업체는 국고지원금을 본 프로젝트를 위한 용도에만 이용해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휴일수당, 차량 유류대 및 차량 관련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기재 불가)</p>
<p>마. 사업비 산출 내역의 예산합계는 세부 예산서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하며, 각 세부내역별 산출내역에 단가, 횟수, 인원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 (천원단위 미만 절사)</p>
<p>바. 예산산출 오류가 있거나 계상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선정 후 보조금 사용계획서 별도 제출 예정</p>

□ **진흥원 내부규정**

전문가 수수료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대 상	등급/기준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발표자/사회 자/토론자	1등급	500,000	
		2등급	400,000	
		3등급	300,000	
강사료	강사	1등급	300,000/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	20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보조강사	-	50,000/시간	현장지도 및 실습보조 등
심사(평가)비		위원장	100,000/평가당	1일 최대 6시간 , 국외 실소요액
		심사(평가)위원	100,000/시간	
일반 자문비			100,000/시간	1일 최대 3시간, 국외 실소요액
전문 자문비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위험관리, 경영 컨설팅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집필자	1등급	40,000원/A4 1매	원고내용, 등급, 사안의 중요성,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120% 범위 내로 가중치 적용
		2등급	32,000원/A4 1매	
	디자인료	PPT 기준	50,000원/A4 1매	
통역료	동시통역 (전문통역사)	1등급	100만원 이내 / 1일(6시간)	2시간 이하 기준액의 80%내, 6시간 초과 시 최대 2시간까지 시간당 지급 (동시통역 15만원, 도우미 2만원)
		2등급	80만원 이내 / 1일(6시간)	
		3등급	60만원 이내 / 1일(6시간)	
	외국어도우미	외국유학생	12만원 / 1일(6시간)	
번역료	번역자	외국어⇒한글	30,000/A4 1매(25행)	1장미만 번역 시 외국어 → 한국어 5만원 한국어 → 외국어 10만원
		한글⇒외국어(영,일)	60,000/A4 1매(25행)	
		외국어⇒기타외국어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원고료 등급기준

1등급 : 1. 대학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전임강사 이상

2.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3. 언론기관, 전문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및 부장급 이상

4. 기타 1호~3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2등급 :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통역료 등급기준 : 1등급(경력 10년 이상), 2등급(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3등급(경력 5년 미만)

※ A4-1Page : 12Font/35Line, 신명조, 상하1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여백 20mm

※ A4 1매는 원고지 4장 기준임

※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 사업특성으로 인한 기준단가 초과 집행 시 사유 명시하여 진흥원과 사전 협의